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천준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39

발의연월일: 2024. 6. 13.

발 의 자:천준호·부승찬·민병덕

이해식 • 박은정 • 허 영

박성준 • 박용갑 • 한민수

정성호 · 김성환 · 이훈기

김현정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에서는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 법률 제정 권한을 분명히 하고 있는 한편,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집행 등을 위해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분 화·전문화·복잡화된 현실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 적으로 행정입법에 대한 근거도 함께 두고 있음.

이처럼 대통령령 등은 법률에 종속되는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는 행정입법의 사례가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행정입법을 통제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, 현행법상으로는 단순히 처리 의견을 권고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거나 회피해도 마땅히 구속할 수단이 없다는 비판이 있음.

이에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·총 리령 및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수정·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 록 하고, 이 경우 정부는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국회가 수정·변경 요구를 의결한 때로부터 6개월 후에는 해당 대통령령등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입법 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함(안 제98조의2제4항 등). 법률 제 호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8조의2제4항 중 "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이"를 "대통령령등이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송부한다"를 "송부하여 수정·변경을 요구한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"검토결과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그 처리결과(송부받은 검토결과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)를 국회에 제출하여야"를 "수정·변경 요구에 대한 사항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"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과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한다.

- ⑦ 전문위원은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한다.
- ⑧ 국회가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여 본회의 의결로 수정·변경을 요구한 경 우 해당 대통령령등은 본회의 의결일부터 6개월 후 효력을 상실한 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98조의2(대통령령 등의 제출 제98조의2(대통령령 등의 제출 등) ① ~ ③ (생 략)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상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-----<u>대통령령등이</u>-----검토 결과 대통령령 또는 총리 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 경과와 처리 의견 등을 기재한 검토결과보 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 된 검토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, 국회는 본회의 의결 로 이를 처리하고 정부에 송부 한다. 하여 수정 • 변경을 요구한다. ⑥ 정부는 제5항에 따라 송부 받은 검토결과에 대한 처리 여 ----수정·변경 요구에 대한 사항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 부를 검토하고 그 처리결과(송 를 국회에 보고하여야----. 부받은 검토결과에 따르지 못 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 다)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⑦ 상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⑦ 전문위원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부령이 법률의 취지 대통령령등을 검토하여 그 결

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 과를 해당 위원회 위원에게 제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 용을 통보할 수 있다.

⑧ 제7항에 따라 검토내용을 ⑧ 국회가 제4항과 제5항에 따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 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 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⑨ 전문위원은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등을 검토하여 그 결 과를 해당 위원회 위원에게 제 공한다.

공한다.

라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 여 본회의 의결로 수정ㆍ변경 을 요구한 경우 해당 대통령령 등은 본회의 의결일부터 6개월 후 효력을 상실한다. <삭 제>